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
# 의료기관 감염예방 · 관리

[요양병원용]

2020. 4.

중앙방역대책본부

- 이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상황에서 요양병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·관리 절차와 방법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,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감염에 있어 고위험군으로 중증 또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입원환자와 의료종사자 및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감염관리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.
- 본 지침에서는 요양병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1) 병원 안으로 확진 환자 유입 예방, 2) 병원 안에서 전파 발생 방지, 3) 병원 밖으로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.

# 〈목 차〉

I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즉각 조치사항	2
II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	2
	1. 대책팀 구성, 담당자 지정 및 활동	2
	2. 병원 내에서 신체적 거리두기 실천	3
	3. 가족 및 방문객 관리	3
Ш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	4
	1. 조기 인지	4
	2. 환자 관리	5
	3. 감염 관리	6
	4. 청소 및 환경관리	10
	5. 세탁물 관리	11
	6. 의료폐기물 관리	12
붙	임 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확인점검표(요양병원용)	13
붙	임 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자가점검표(요양병원용)	14
서	식 1. 일일 임상 <del>증</del> 상 기록지 ······	16
서	식 2.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(예시)	17
참.	고 1. 요양병원 준수사항(행정명령)	18
참.	고 2.「감염병 일일 상황 점검현황」작성 · 제출방법	19

## 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즉각 조치사항

	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바로 조치할 일										
대책팀 구성	직원/간병인력 관리	<u>환</u> 자 <del>괸</del> 리	가 <del>족</del> ·방문객 관리								
	예방										
<ul> <li>환자 발생 대비 대 책팀 구성</li> <li>분야별 업무분장 및 각 담당자 지정</li> <li>병원 내 대책 수립, 모의훈련</li> </ul>	<ul> <li>감염예방관리 수칙</li> <li>교육</li> <li>보호구 사용 훈련</li> <li>(마스크 쓰기 방법)</li> <li>신체적 거리두기 실천</li> <li>* 가능하면 2미터 이상, 최소 1미터 이상 유지</li> </ul>	· 감염예방관리 수칙 교육(손위생, 마스크 착용법) · 신체적 거리두기(집단 활동 자제, 개별식사, 이동 최소화)	위험요인 확인하여 없는 경우에만 허용								
	대응수칙(	· 출입자 마스크 착용,									
(오염구역 설정, 동선       관리 포함 등)       ·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	· 감염환자 접촉력 등 위험요인 확인 · 일일 증상확인 기록 · 유증상시 출근 금지	<ul> <li>매일 증상 확인·기록</li> <li>신환자 위험요인 확</li> <li>인, 선제 격리</li> <li>원인불명폐렴 확인, 격리</li> </ul>	환자와의 접촉 최소 또는 금지								
☞ (분이2) 귀i	- 	대응 자가정건표(요약	변위요) 항이저거 변위요) 항이저거								

☞ (붙임2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자가점검표(요양병원용) 확인점검

## 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

### 1. 대책팀 구성, 담당자 지정 및 활동

- 1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책팀을 구성하여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고 운영관리를 할 담당자를 지정한다.
  - 대책팀은 병원 내 대책에 따른 분야별 책임자 및 업무분장을 확인하고 모의훈련을 통해 대책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행정적 지원 및 자원 동원을 필요성을 확인하여 조정한다.
- 2) 감염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.
-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. 교육훈련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이해와 감염예방 조치(손위생, 호흡기에티켓, 표준주의 및 코로나19 전파경로별 주의지침)를 포함한다.
- ☞ '코로나19 감염예방 특별교육과정'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된 강의자료(PPT 슬라이드 및 동영상 강의) 참조

- 재원 환자와 및 간병 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안내한다.
- 직원의 감염예방수칙(손위생, 호흡기에티켓, 보호구 사용 등)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피드백한다.
- 손위생과 호흡기 에티켓의 실천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전략(출입구 및 환자 관리 현장에 알코올 손소독제 비치, 포스터 등)을 활용한다.
- 직원들이 업무 시작 전, 환자 접촉 전·후, 화장실 다녀온 후 및 식사 전 손위생을 반드시하도록 강조한다.

### 2. 병원 안에서 신체적 거리두기 실천

코로나19 확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병원 안에서 다음과 같이 신체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.

#### 1) 환자관리 관련 신체적 거리두기 준수사항

- 집단 활동(Group activity) 시 신체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취소한다.
- 식당에서의 단체 식사보다는 개별 식사를 제공한다.
- 환자 사이와 환자 간병인력 사이 거리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소한 <u>1m 이상을</u> 유지하고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.
- 병원 내 환자 이동을 가급적 금지한다.

#### 2) 종사자(간병인 포함)의 신체적 거리두기 준수사항

- 병원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.
-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덮을 수 있게 착용하며, 마스크 안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.
- 마스크 착용중이더라도 최소 1미터(2미터 이상 권장)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(근무 인계시간, 휴식시간, 출퇴근 밀집시간대, 식당 줄서기 등)
- 병원 내에서 모여 차를 마시거나 사교적 대화는 삼간다.
- 대면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- 항상 손위생을 철저히 한다.

## 3. 가족 및 방문객 관리

-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을 금지한다.
- 불가피하게 면회가 필요하면 환자 당 1인 이내로 제한하여 방문객 명단을 작성하며
  - 방문객은 발열, 인후통,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, 해외여행력 및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방문을 허용한다.
  - ☞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(서식2)
- 방문객도 환자와 <u>1미터</u>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여 대화하고, 손위생을 실천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에 면회를 끝낸다.
- 방문객은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와는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다.

## Ⅲ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

요양병원에서의 코로나19 대응은 조기 인지·격리·관리 및 감염원 통제(감염 확진자로부터 확산을 방지하는 것)를 기본으로 한다.

### 1. 조기 인지

- 1)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조기 인지하여 격리 및 관리하는 것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이다.
- 2) 기관 내 모든 환자와 직원 및 간병인력을 대상을 코로나19 전향적 감시를 실시한다1):
-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증상과 징후 및 위험요인을 확인한다.
- 모든 재원환자와 기관 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(종사자 및 간병인 포함)에 대해 발열, 기침 등 아래 의심증상\*이 있는지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기록(시스템 입력)\*\*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시 일 2회 이상 확인한다.
  - \* 1) 발열·오한, 2)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, 가래(객혈), 숨이 찬 느낌, 코막힘 또는 콧물), 3) 근육통·관절통, 4) 피로감, 5) 두통
- \*\* 일일 임상증상 기록지(서식1)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→요양기관 정보마당→ 「감염병 일일 상황 점검현황」에 종사자·간병인 인적사항. 일일 건강상태 등 등록(참고2)
- 원인불명 폐렴 환자는 선제격리 후 진단검사를 실시한다.
- 3)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(간병인)는 업무배제(출근금지), 환자의 경우 주치의 판단\*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.

<sup>1)</sup> 요양병원 준수사항 행정명령(보건복지부, '20.3.20, 4.10 현행화)

- \* 의심증상 1번과 다른 증상 $(2\sim5$ 번)이 함께 있을 경우 반드시 검사 실시
- 근무 도중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지정된 책임자(또는 별도 지정된 담당자)에게 바로 보고하고 업무를 중지(집인 경우 출근금지)한다.
- 직원(간병인력 포함)들의 코로나19 노출여부(코로나19 환자와의 접촉, 가족 포함)를 모니터한다.

### 2. 환자 관리

#### 1) 입원환자 중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;

- 환자에게 마스크를 씌운 다음 1인 병실(또는 빈 병실)로 옮긴다.
- 환자발생 신고를 하고 코로나19 대응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.
  - ☞ 환자관리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」 의료기관 관리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」

#### 2) 환자 관리 시 주의 사항;

- 확진/의심 환자를 접촉하는 의료진은 **손 위생**과 환자의 혈액, 체액, 분비물, 피부와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 **상황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구**(전신보호복 또는 긴팔가운, 일회용 장갑,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,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)를 선택하여 착용해야 한다.
  - ☞ 표 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
- 확진/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의료진은 손 위생과 개인보호구(전신보호복, 일회용 장갑,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)를 착용해야 하며, 환자가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까지 착용해야 한다.
- 확진/의심 환자 접촉 전후에 다음과 같은 순서를 숙지하여 진행해야 한다.

<b>환자 접촉 전</b> (순서)		<b>환자 접촉 후</b> (순서)
1. 손 위생		1. 장갑과 가운 탈의
2. 가운(전신보호복) 착용	<b></b>	2. 손 위생
3. KF94 또는 동급이상의 마스크	환자 접촉	3. 고글(안면보호구) 탈의
착용		4. 손 위생
4. 고글(안면보호구) 착용		5. 마스크 탈의*
5. 장갑(소매 위 당겨 착용) 착용		6. 손 위생

\* 탈의공간이 음압이 아닌 경우 탈의공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후 마스크를 탈의

## 3. 감염관리

#### 1) 손위생

- 손 위생은 환자 접촉 전후에 시행하며, 환자의 혈액, 체액, 분비물, 배설물, 기타 오염물질과 접촉하였거나 환자의 주위 환경에 노출된 모든 경우에 시행한다.
-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소독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다.
- 물과 비누를 이용한 경우 40-60초,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할 경우 20-30초 동안 손 위생을 시행한다.
- 손 위생 방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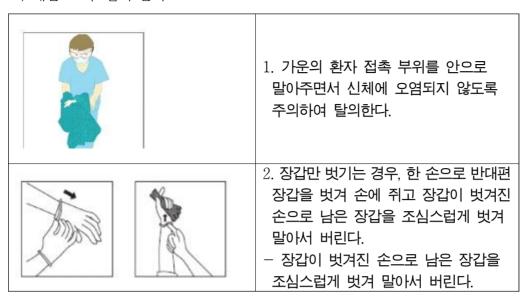
#### 2) 개인보호구

- 개인보호구는 병실을 출입할 때마다 교체해야 한다.
- 개인보호구는 병실에서 착용해서는 안 되며, 별도로 준비된 공간(전실이 있는 경우 전실, 전실이 없으면 병실 들어가기 전 간호사실 등에서 착용 가능)에서 완벽히 착용하고 입실 전 착용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.
- 개인보호구 탈의 후 외부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수거해야 한다.

## •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

	1.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.
	2. 가운을 입는다.
	3. 마스크를 착용한다.
	4.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.
	5.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, 흡입/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.
	6.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.
Latter Comments	7.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. (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.)

### 5) 개인보호구 탈의 순서



\* 장갑을 2중으로 낀 경우 장갑을 벗고, 가운의 끈 등을 조절하여 가운을 벗고, 최종적으로 장갑을 벗는 순으로 할 수 있음.



### <표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>

	개인보호구							
	호흡기 보호				눈 보호			
상황, 행위	수술용 마스크	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	전동식 호흡기 보호구	일회용 장갑 <sup>2)</sup>	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	전신 보호복 (덧신포함)	보안경 (또는 안면보호구)	
검역(역학조사)		•		•		•	•	
선별데스크		•		•	•			
격리진료소 접수, 안내		•		•	•			
격리진료소 진료, 간호		•		•	•		•	
이송(구급차 운전자)3)		•		•				
이송(검역관, 보건소직원, 응급구조사 등)		•		•		•	•	
구급차 소독		•		•		•	•	
의심환자 병실출입, 진료, 간호 등		•		•	•		•	
에어로졸 생성 처치4)		•	)	•	•	١	•	
검사(X-ray 등 영상의학검사)		•	)	•	•		•	
호흡기 검체 채취		•	)	•	•	١	•	
검체 취급(실험실, 검사실 등) <sup>5)6)</sup>		•	•	•	•	1	•	
검체 이송(파손없이 포장된 검체)				•				
사체 이송, 안치		•		•		•		
병실 청소·소독		•		•	•		•	
의료폐기물 포장, 취급		•		•	•		•	
의료폐기물 운반	•			•	•			

자료원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제7판), 질병관리본부, 2020

<sup>2)</sup> 의심·확진 환자 구역의 진료, 처치, 간호, 검사,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,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이중장갑 착용

<sup>3)</sup>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 복(덧신포함),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, 장갑(필요 시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) 착용

<sup>4)</sup>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(endotracheal intubation), 심폐소생술, 기관지내시경술, 기도 분비물 흡인, 기관관리(tracheostomy care), 사체부검, 비침습적 양압환기(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), 분무요법(nebulizer therapy), 가래배출 유도의 처치, 상황, 행위를 말함

<sup>5)</sup> 검체 취급 실험실·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, 사용,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(질병 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)에 따름

<sup>6)</sup>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(긴팔), 일회용 장갑 착용 Lee H, Ki C-S, Sung H, et al.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. Infection & chemotherapy. 2016;48(1):61-69.)

## 4. 청소 및 환경관리

#### 1) 일반원칙

- 개인보호구는 병실을 출입할 때마다 교체해야 한다.
- 청소나 소독을 담당한 직원은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개인보호구(KF94 또는 동급이상의 마스크, 전신보호복 또는 소매를 덮는 앞치마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신발덮개 또는 고무장화, 2중장갑(겉장갑은 고무장갑))를 착용하다.
- 환경 표면에 유기물이 있으면 적절하게 소독이 되지 않으므로 환경 소독 전 표면을 닦아낸다.
- 병원균의 분무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청소 방법 보다는 청소용액이나 소독제를 적신 걸레를 이용하여 청소를 시행한다.
- 소독제를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고, 깨끗한 타올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(타올)를 이용하여 환경 표면을 철저하게 닦는다.
- 청소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한다.
   단, 청소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, 사용한 청소도구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한다.

#### 2) 소독제

-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(1000ppm 권장<sup>7)8)9)</sup>, 70% 알코올(국소 표면인 경우) 등이 포함되며, 살균력이 입증된 바이러스용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다.
- 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희석배율, 접촉시간,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사항을 따른다.

####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방법

- · 희석배율 : 0.1% (1,000ppm) 기준 (5% 락스를 1:50 으로 희석)
- 희석방법(1mL 희석액 기준) : 물 1,000mL, 5% 락스 20mL
- 접촉시간: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 분 이상, 물품 침적 시 30 분 침적

<sup>7)</sup> Best Practices for Environmental Cleaning in Healthcare Facilities: in Resource-Limited Settings(ver 1), 2019

<sup>8)</sup> Novel coronavirus (2019-nCoV) Guidance for primary care Management of patients presenting to primary care Version 5.0, 2020, NHS

<sup>9)</sup> Novel coronavirus (2019-nCoV)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guidance Updated 3 February 2020. PHE

#### 3) 소독의 시점

- 혈액, 체액, 분비물,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
- 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격리실 주변 환경은 적어도 매일 시행하며 손의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자주 시행

#### 4) 퇴실 후 병실소독

- 준비
  - 인력, 물품, 병실 별 소독 아이템 목록 등 계획을 세우고, 점검표를 만든다.
  - 청소/소독과정을 모니터링한다.
  - 청소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한다.
- 모든 직물재질(침구류 커버, 커튼, 천가구 등)은 교환한다. 일회용 기구는 폐기한다.
- 육안상 오염은 일회용 타올 (wipe) 또는 밀걸레 등으로 제거하고 필요시 세제를 사용한다.
- 환경표면 소독
  - 모든 비투과성 표면(천장과 조명 포함)은 0.1% 차아염소산나트륨(1,000ppm) 또는 이에 상당한 의료용 환경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타올 또는 밀걸레 등으로 철저히 닦는다.
  - 투과성 표면은 가능한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소독액에 침적한다.
- 소독이 끝나면 오염의 정도를 고려해 최소 2 시간 이상 환기(시간당 6 회 이상 환기)를 한 후 물을 적신 깨끗한 일회용 타올과 걸레로 표면을 닦아낸다.
  - 체크리스트로 빠짐없이 소독과 환기가 되었는지 점검 후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있다.

## 5. 세탁물 관리

- 청결한 세탁물은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.
- 세탁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오염된 세탁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개인보호구(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, 가운, 장갑, 덧신 등)를 착용하고, 개인보호구 제거 후 손위생을 수행한다.
- 환자에게 사용된 세탁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(「폐기물관리법」,「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」등 참조).
- 세탁물을 수집, 수거, 운반, 그리고 세탁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세탁물을 취급하는 직원이나 주변 환경에 병원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.

## 6. 의료폐기물 관리

- 폐기물 처리는 의료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른다.
- 폐기물은 적절하고 안전한 취급을 위해 발생 장소에서 분리하여 처리한다.
- 바늘이나 칼날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는 뚫리지 않는 폐기물 전용용기에 수집하며, 용기는 물품을 사용하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.
- 고형의 날카롭지 않은 감염성 폐기물은 새지 않는 폐기물용기에 수집하여 뚜껑을 닫아둔다.
- 환자의 체액이나 배설물은 하수배출규정에 따라 하수설비에 폐기한다. 단, 체액이나 배설물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게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##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확인점검표(요양병원용)

연번	확인 내용	결과
1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<b>대책팀을</b> 구성, <b>감염관리 전담자를 지정,</b> 기관 <b>감염</b> 예방·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?	
2	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·관리수칙에 대한 <b>교육</b> 과 보호 구 착탈의 등에 대한 <b>훈련과 평가</b> 를 하고 있는가?	
3	의료진에게 필요한 <u>개인보호구</u> 를 구비하고 있으며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가? (개인보호구 사용 지침, 착탈의 순서 게시)	
4	입원 시 부터 호흡기 감염증(예:기침,발열,인후통)에 대한 초기 평가와 지속적 전향적 감시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실행하는가?	
5	환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<b>감염예방수칙(</b> 손위생, 호흡기 에티켓 등)과 <b>신체<u>적 거리</u> 두기 등에 대한 교육과 이행여부</b> 를 확인하고 있는가?	
6	방문객 출입 제한에 대한 기준과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운영하는가?	
7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심/확진 환자 발생 시 <u>1인실</u> 혹은 <u>코호트 가능한 병실로</u> <u>배치</u> 가 가능한가?	
8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심/확진 환자의 <b>이송 체계와 절차, 주요 기관 및 급성기</b> 병원과의 긴급 연락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가?	
9	환경 청소 및 소독 등 환경 관리를 위한 적절한 내부지침이 있는가?	
10	오염세탁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히 수집, 수거, 운반, 처리하고 있는가?	
11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오염된 <b>의료 폐기물</b> 에 대한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?	
12	의료종사자 및 기관 내 근무인력에 대한 <b>지속적 전향적 감시(발열, 호흡기 증상</b> 등)를 위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실행되는가?	
13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심/확진환자에 <b>노출된 직원, 환자(및 방문객 등) 관리</b> 방침이 마련되어 있는가?	

자료원) National capacities review tool for a novel coronavirus (nCoV) 10 Jan 2020, WHO/2019-nCoV/Readiness/v2020.1 일부 수정

## 붙임 2

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자가점검표(요양병원용)

	요양병원 코로나 19 대응 자가점검표									
	일 : 2020년		당 부	분에 '						
* 점 검		(서명) * 확 인 자 :		ol I	(서명)					
구분	항목	점검사항	예	아니 오	비고					
	협력체계 대응팀	비상연락체계는 현재 기준으로 마련되어 게시 (격리시설-관할 보건소-관할 사군구 및 사도) 코로나 19 대응팀 구성, 업무분장 명시								
	구성	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병원 내 대책, 확진자 발생시 이송계획 수립 발열환자를 위한 예비병실(가능한 1인실) 확보			관리자 직 성명 : 확보병실 : 실					
	시설관리	예비병실 동선 및 오염 구역 설정 병원 공조/환기 확인(재순환 여부 등)			1±0E. E					
의료 기관	종사자 관 리	모든 직원(간병인 포함) 명부 작성, 일일 건강상 태확인(발열, 호흡기증상 등) 종사자 감염관리수칙 교육(손위생, 마스크 착용 등) 발열, 기침 등 의심증상 있는 경우 업무배제(출 근금지) 규정마련 및 직원 공지 종사자의 확진자 접촉 등 감염노출여부 확인 대면회의 및 회식 자제								
	환자관리	발열, 기침 여부 등 건강상태 모니터링·기록 발열, 기침 등 의심증상 있는 경우 1인실 격리,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병원 내 환자 이동 통제 집단활동, 단체 식사 금지 환자와 환자, 환자와 간병인간 최소 1m이상 거리 유지, 접촉 최소화			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 실시한 인원 명 *현재까지 명					
종사자, 간병인	해야 할 일	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 착용 종사자 사이 접촉 최소화, 1m 이상 거리유지 병원 업무 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(종교행사, 결혼, 장례식 등 사람 많은 곳 피하기) 본인이 맡은 환자만 돌보기 손소독 하기(출·퇴근시, 환자 접촉전·후, 환자 분비물 처리 후) 해외 방문이력, 본인 또는 가족이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병원에 알리기								
	하지 말아 야 할 일	다른 병실 물건, 교환, 공유하지 않기 모여서 차 마시기, 대화 등 하지 않기 환자와 간병인 식사시간 구분하고 함께 식사하지 않기 발열, 기침 등 의심 증상 있는 경우 즉시 병원에 알리고 출근하지 않기* (*진료, 코로나 진단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)			금일 명 *현재까지 명					

구분	항목	점검사항	예	아니오	비고
	의료기기 소독	세척 : 오염기구 오염박스 담아 세척실 이동 세척 시 보호구 착용 : 마스크, 긴팔방수가운, 고글, 모자, 고무장화 또는 신발덮개, 고무장갑			
		소독시점 : 청소 매일 시행, 손의 접촉 빈번한 곳 자주 환자 퇴실 후 시행			
		바닥청소 : 락스 100배 희석 등 소독제 이용 청소			
	청소	환경표면소독 : 분사하지 않고 소독제 적시거나 소독티슈사용			
	의료폐기 물 관리 세탁물관 리	청소도구 관리 : 재사용 시 락스 100배 희석 등 침 적소독 후 헹궈서 건조시켜 보관			
칭건		청소 후 환기 : 시간당 6회 이상 환기			
환경 관리		의료폐기물 박스 표지 확인 (병원명, 부서, 사용 개시일 기재)			
		용기 : 물품사용 장소에 비치			
		감염환자 발생 시 :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			
		보관 : 청결세탁물 별도공간 보관			
		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 구분하여 보관			
		세탁물 취급자 : 마스크, 가운, 장갑착용 (확진자 발생 시): N95마스크, 가운, 덧신, 장갑			
		수집, 수거, 운반 : 취급자 주변 환경에 노츨되지 않게 관리			
		세탁물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			

(자료원; 대구시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리 점검표, 일부 수정)

# 서식 1

# 일일 임상증상 기록지(예시)

부서(장소)명:								
대상자 성명	일시	체온	①기침②권태김	<b>흐흡기증상</b> ③호흡곤란(		감염관리수칙 준수여부	특이 사항	
	□오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전	$^{\circ}$ C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후	C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후	C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전	$^{\circ}$ C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후	C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후	C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후	C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후	C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후	C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후	C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	□오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	)	□예 □아니오		

# 서식 2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(예시)

날짜	일시	이름	주소	방문 목적	체온(℃)	호흡기 증상*	특이사항**
					<i>36.5</i>	_	

<sup>\*</sup> 기침, 권태감, 호흡곤란, 인후통 및 기타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확인

<sup>\*\*</sup> 해외여행력 및 확진자 접촉 여부

## **참고 1** 요양병원 준수사항(행정명령, '20.4.10 현행화)

## 방역 관리자 지정

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기존 「의료법」제59조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 준수사항('20.20.2..17, 3.20)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행화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.

## < 기존 준수사항(3.20) >

- 1. 종사자(간병인), 환자의 의심증상 확인,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기관별 책임자 1명 지정
- 2. 외부인 출입통제(병문안 등 금지, 출입자 명부 작성)
- 3. 종사자(간병인), 환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, 기침 등 아래 의심증상 있는지 여부 매일 확인 및 기록(시스템 입력)
  - \* 1) 발열·오한, 2)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, 가래(객혈), 숨이 찬 느낌, 코막힘 또는 콧물), 3) 근육통·관절통, 4) 피로감, 5) 두통
- 4. 위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(간병인)은 업무배제(출근금지), 환자의 경우 주치의 판단\*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
  - \* 의심증상 1번과 다른 증상(2~5번)이 함께 있을 경우 반드시 검사 실시
- 5. 종사자(간병인)가 환자 대면 또는 입원실 출입시 마스크 착용

## <기존 준수사항(2.17) >

- 1.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
  - 중국, 홍콩, 마카오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 이력있는 종사자 및 간병인은 입국 후 14일간 관련 업무 종사 금지
  - \* 환자가 직접 고용한 간병인의 경우에도 출입금지
  - ㅇ 해외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,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배제하고 필요시 진단검사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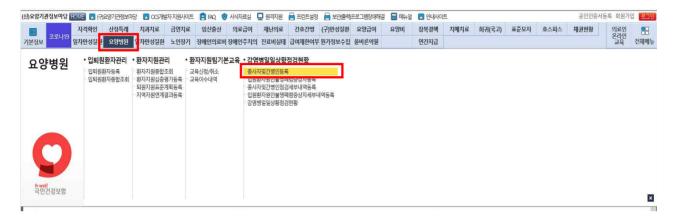
- 2. 폐렴 환자 관리 : 원인불명 폐렴 환자는 격리 후 진단검사 실시
- 3. 확자 면회객 제한
  - 중국, 홍콩, 마카오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 이력있는 자는 입국 후 14일간 환자 면회 금지
  - 해외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,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자는 환자 면회 금지
  - 모든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, 손소독 실시(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1일 1회로 제한)
  - 의료기관은 면회객의 이름 및 연락처 기재해 명부 보관
- 4. 보고의무 : 의료기관의 장은 첨부 현황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2.24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메일, 팩스 등으로 보고
- 1. 기존 준수사항(3.20)의 1, 2, 3, 4, 5번 항목을 관리하고, 요양병원 관내시군구 소관부서, 보건소, 소방서, 선별진료소, 다른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'방역관리자'를 1인 이상 지정
- \* 기존 요양병원 감염관리책임자(시스템 입력) 겸임 가능, 출입자 명부에는 성명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작성
- 2. 방역관리자는 기존 준수사항(2.17) 1, 2, 3번 항목을 관리하여 업무배제 (출근 금지) 및 면회 제한(출입 금지)
- \* 다만, 병문안 등은 3.20 준수사항에 따라 금지
- 다만, 대상을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뿐 아니라, 가족 등 거주를 같이하는 사람이 '자가격리자'인 사람까지 확대
- 3. 방역관리자는 유증상자가 나타날 경우 관내 보건소에 신고하고 진단검사에 협조, 환자의 경우 유증상자가 발견되면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별도 분리하여 대기토록 조치

2020. 4. 1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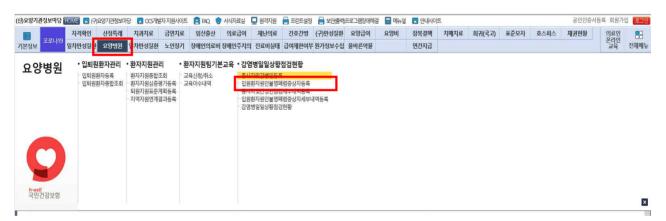
## 보건복지부장관

## 참고 2 「감염병 일일 상황 점검현황」작성·제출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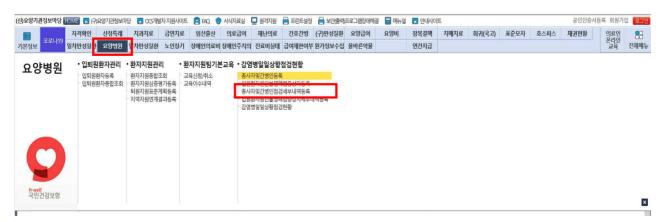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-요양기관 정보마당-법인인증서 로그인
-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가병인 등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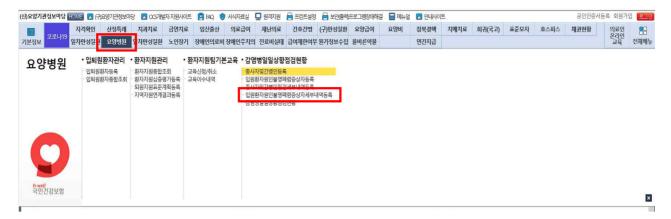
■ 요양병원 - 입원환자 원인불명 폐렴 증상자 등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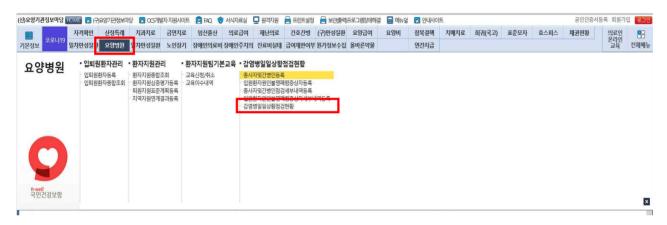
■ 요양병원 - 종사자 및 간병인 점검 세부내역 등록



■ 요양병원 - 입원환자 원인 불명 폐렴 증상자 세부내역 등록



■ 요양병원 - 감염병 일일상황 점검 현황



- 일일 점검 현황 제출 절차
- ① 점검 일자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
- ② ITS 활용, 병문안제한, 종사자·간병인 여행이력관리 Y/N 체크
- ③ 종사자/간병인/환자 변동 현황이 앞서 입력한 값과 동일한 지 확인
- ④ 각 현황의 세부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'종사자 및 간병인 등록 현황보기' 또 는 '원인불명 폐렴 증상자 변동 현황보기' 클릭
- ⑤ 입력값과 현황이 정확한 경우 '제출' 클릭
- ⑥ 기 제출한 현황은 당일에 한해 '제출삭제' 클릭하여 삭제 후 등록 화면에서 수정 가능

#### ✓화면 입력 Tip

- 점검일자 당일 24:00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함
-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 현황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, 누락한 일자 건부터 우선 제출 후 당일 건 제출(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처리)

### 본 지침은 다음을 참고로 작성하였다.

-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guidance for Long-Term Care Facilities in the context of COVID-19, WHO, 21 March 2020
- Preparing for COVID-19: Long-term Care Facilities, Nursing Homes, CDC, 2020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제7-4판), 2020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감염예방관리(병원급 의료기관용), 2020
- 요양병원 준수사항 행정명령(보건복지부, '20.4.10)